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
제5조(용자대상업체)	제5조(용자대상업체)
1.	1.
2.	2.
3.	3.
	4. <u>기타 시장의 지원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</u>
제9조(용자조건)①~④(생략)	제9조(용자조건) ①~④(현행과 같음)
⑤용자기간은 <u>1년 이내</u> 로 한다.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간 연장할수 있다.	⑤용자기간은 <u>2년 이내</u> 로 한다.

부천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239
의결 년월일	93. 12. 24 (제25회)

제출년월일 : 1993. 12. .

제출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회

□ 제안이유

- 부천시 도축장 운영에 있어 도축해체 수수료를 현실화함으로써,
- 도축장 경영 합리화 및 위생적인 육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도축해체 수수료 개정
 - 소 수수료 : “24,000원”을 “26,400원”으로 상향 인상
 - 돼지 수수료 : “4,900”을 “5,390”으로 상향 인상

☐ 법적근거

- 축산물 위생처리법 제8조
- 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규칙 제23조
- 도축 해체 수수료 승인 공문

부천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수수료) “별표1”을 “별지”와 같 이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]

(별표1)

도축해체수수료

단위 : 원

도 축 구 분	기 준	수 수 료 액
소	1두당	26,400
돼 지	"	5,390
양 (염 소)	"	4,900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		개정		
(별표1)			(별표1)		
단위 : 원			단위 : 원		
도출구분	기 준	수 수 료 액	도출구분	기 준	수 수 료 액
소 말	1두당	24,000	소	1두당	26,400
돼 지	"	4,900	돼 지	"	5,390
양(업소)	"	4,900	양(업소)	"	(현행과 같음)

부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240
의 건 년 월 일	93. 12. 24 (제25회)

제출년월일 : 1993. 12. .

제 출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회

☐ 제안이유

상수도 수질 향상과 수질화인에 칠지를 기하고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도물 생산을 위하여 감시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코자함.

☐ 주요골자

- 위원회의 목적 강화(안 제1조)
- 위원회 기능의 세분화(안 제2조)
- 위원구성에 보건의료인 확대(안 제3조)
- 회의 요구요건의 완화(안 제6조)